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8,447,054	13,453,412
일반회계	434,619,736	13,038,592
특별회계	13,827,318	414,820
기타특별회계	13,827,318	414,820
상수도	8,691,779	260,753
의료급여기금	1,979,075	59,372
기초생활보장기금	2,250,000	67,500
주민소득지원기금	253,500	7,605
주택사업	274,200	8,226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180,785	5,424
공유임야관리	197,979	5,9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451,31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